

정부·지자체 힘모아 환경오염 피해자 돕는다

- 김포 등 환경오염 피해지역 3개 지자체와 주민 건강검진 및 지원 공동사업 추진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환경오염 피해 지역 3개 지자체(경기 김포시, 대구 동구청, 충남 서천군)와 환경오염피해 지역 통합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4월 14일 서면으로 체결한다.

환경부는 2016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 제정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이번 협약을 체결한 3개 지역(김포시 거물대리, 대구 동구청 안심연료단지, 충남 서천군 옛 장항 제련소) 주민 455명의 환경오염 피해를 인정하고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등 구제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환경오염 피해 3개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부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건강검진 사업의 통합추진을 통해 중복검진 등 행정적인 비효율을 해소하고 정보공유와 활용으로 환경오염 피해자 발굴과 지원을 늘리기 위해 추진됐다.

환경부는 협약 총괄 기관으로 사업을 주관하며, 각 지자체는 예산분담과 더불어 대상 주민 안내 등 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공동용역 계약 등 사업의 실질적인 시행을 맡는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과 함께 환경보건 교육, 힐링캠프 등 각종 주민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검진결과에 대한 결과분석 등을 토대로 지역별 환경오염피해 인정질환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그간 개별적으로 시행되던 정부와 지자체의 주민 건강검진 사업을 통합 추진하게 되었다”라며, “더욱 촘촘한 피해자의 발굴과 검진결과 자료 공유 등으로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과 국민건강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업무협약서. 끝.

담당 부서 <총괄>	환경부 환경보건국 환경피해구제과	책임자	과 장	서민아 (044-601-6810)
		담당자	사무관	송채영 (044-201-6819)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	책임자	실 장	황의득 (044-123-4567)
		담당자	선임연구원	조인근 (044-123-6789)
	김포시청 환경지도과	책임자	과 장	김진량 (031-980-5660)
		담당자	주무관	이종원 (031-980-5665)
	대구 동구청 환경과	책임자	과 장	전명옥 (053-662-2580)
		담당자	주무관	곽서현 (053-662-2582)
	서천군청 환경보호과	책임자	과 장	장기수 (041-950-4340)
		담당자	주무관	조찬우 (041-950-4332)

「환경오염피해지역 통합건강관리사업」 추진 업무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환경부, 기술원, 김포시청, 동구청, 서천군청(이하 “협약기관”이라 한다) 간 통합건강관리사업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의 계획, 재원분담 및 협약기관별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을 협약함에 있다.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김포시청, 대구광역시 동구청(이하 “동구청”이라 한다), 서천군청은 환경오염피해지역 통합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 공동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용역의 범위) 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역명 : 환경오염피해지역 통합건강관리사업
2. 용역기간 : 계약일 ~ '23.9(변경될 수 있음)
3. 용역비 : 800백만원(VAT 포함, 변경될 수 있음)
4. 용역내용 : 환경오염피해지역*에 대한 주민 건강검진 실시 및 결과활용, 건강관리서비스(힐링캠프 등) 추진 등

* 김포시청(김포 거물대리), 동구청(대구 안심연료단지), 서천군청(서천 (구)장항제련소)

제3조(역할) 협약기관은 상호 협력하에 아래 각 호와 같이 협력한다.

1. 환경부는 통합건강관리사업을 총괄하며, 본 용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2. 기술원은 용역 계획 수립, 용역계약 체결, 용역사업 내용의 실질적 추진 등 본 용역을 주관하여 수행한다.
3. 김포시청, 동구청, 서천군청(이하 “지자체”라 한다)은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안내, 관련 자료 제공 등 본 용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제4조(용역비 분담 및 집행) ① 협약기관은 제2조제3호의 용역비를 아래와 같이 분담한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액	환경부 (기술원)	김포시청	동구청*	서천군청
용역비	800	600	90	(행정협조)	110
분담률	100%	75%	11%	-	14%

* 동구청은 예산 특수성을 고려, 별도의 예산분담 없이 행정적 협업 추진

② 용역의 계약결과에 따른 실제 분담액은 제1항의 분담비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용역비 변경에 따른 정산 시에도 제1항의 분담비율을 적용한다.

③ 기술원은 용역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분담금액을 청구하며, 지자체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원이 지정한 계좌에 분담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 절차상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술원과 기한연장이 필요한 협약기관간 상호 협의하여 납부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용역의 변경) 협약기관은 보다 내실있는 용역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제2조의 용역범위(기간, 비용, 내용 등)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용역비 정산) 기술원은 용역이 완료된 후 관련서류(결과보고서, 내역서 등)를 협약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낙찰가 차액 등의 사유로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기관간 상호 협의하여 정산한다.

제7조(협약의 해석)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협약기관간 이견이 있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협약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기관 간 서면 합의를 통해 이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 발생
 2. 국가 시책의 변경
 3. 일방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용역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협약기관은 협약 해지일 또는 해제일을 기준으로 제4조를 준용하여 용역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비밀유지) 협약기관은 이 협약을 이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와 비밀 등은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상호 간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는 용역 기간 만료, 해지 또는 해제 등으로 협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같다.

제10조(신의성실 및 협조 의무) ① 협약기관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협약기관은 용역 추진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는 등 용역 추진에 적극 협력한다.

제11조(효력기간) 이 협약은 협약체결일부터 용역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5부를 작성하고 협약기관이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4월 14일



환경부

환 경 부 장 관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인)



김 포 시 장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인)



서 천 군 수 (인)